

2023 년도

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

(정기)

-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·평가)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6조(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)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하며,
 - 아울러 평가불가 기관과 평가결과가 '미흡'인 일부 지표에 대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통보 평가지표
<시설> 시설기준, 인력기준, 식품위생관리, 감염병관리, 노인인권보호
<주야간보호·단기보호> 시설기준, 인력기준
 - ※ 등급표기 방법
 - 정기평가: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 실시
 - 수시평가: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등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 실시
 - 평가등급(5등급):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A(최우수), B(우수), C(양호), D(보통), E(미흡)

(방문간호)

시군구: 울산광역시 북구

장기요양기관명	장기요양기관기호	급여종류	점수(등급)	기관운영	환경및안전	수급자권리보장	급여제공과정	급여제공결과	가점
A+복음재가복지센터	23120000096	방문간호	91.55	13	11	21.25	31	15.3	0
			정기 A						
양지노인복지센터	33120000042	방문간호	92.3	16.5	12	22	30	11.8	0
			정기 A						

2024년 3월 5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장기요양기관 평가불가기관 통보서

(정기)

(방문간호)

시군구 : 울산광역시 북구

연번	장기요양기관명	장기요양기관기호	급여종류	평가불가사유
	대상기관 없음			

2024년 3월 5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